2019 대구경북 머니엑스포 스타트업 마켓존 부스 참가신청서

Ⅰ. 참가기업(참가자) 기본 사항 ※ 주요 업무 및 공지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드립니다

회사명			대표자명	
주소				
담당자	성명		직위	
	연락처		이메일 주소	
전시품목 (상세 기입)				

< 2019 대구경북 머니엑스포 스타트업 마켓존 참가 규정 및 약관 >

1. 행사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 신청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참가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완납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 행사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참가 예정품목이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, 사무국은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3. 사무국은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, 참가업체의 신청 접수 및 입금 순에 따라 신청 규모, 전시 품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정된 참가자의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4. 참가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5. 참가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에 명시한 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행사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, 또는 사무국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사무국은 즉시 전시 중지,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,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6. 참가자는 사무국의 사전 승인 및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전시 면적을 초과하여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.
7. 참가자는 참가비의 전액을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.
8. 참가자가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납입된 중도금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9.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회장 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시, 이미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10. 사무국에서 행사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사무국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또한 참가자는 사무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11. 참가자는 행사장 기간, 장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정된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, 도난에 대하여 책임진다.
12.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사무국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및 모든 기자재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.
13. 본 참가 규정 및 약관에 대해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
본인은 상기 참가 규정 및 약관을 수락하며 참가신청 및 계약에 동의합니다.

2019년 월 일

신청인 (인/ 서명)